

지방채무 관리제도의 강화

이수범 / 인하대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1. 지방정부와 국민경제

국민경제 내에는 공공경제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지방정부는 한 국가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지방 내지 지역경제 조정·지원자로서의 지위를 넘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전국적 경제의 안정적 성장, 자원의 적정배분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그 목표로 한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면서 관할 영역에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¹⁾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1)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고 (2)당면한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나아가 지역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을 구제하며 동시에 주민의 최대편익을 이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4)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이같은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방정부도 그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재정적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지방채 발행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 Brown & Jackson, Public Sector Economics, P. 57-159

현대사회는 개인이 투자한 기업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상품도 공공과 연계됨으로 건설한 상품과 서비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도태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정부라는 경제주체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정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정부가 가장 무책임한 과소비 주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²⁾ 정부(중앙·지방정부 포함)는 비생산적 소비성투자를 우선 감축하여야 한다. 한 예를 들면 최근 신축되거나 신축된 광역시청, 도청, 기초자치단체 등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소비적 청사 등은 우선 순위를 무시한 권력형 과소비적 투자인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바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강화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관청은 시장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건물의 임차로 사용하고 이같이 낭비한 소비성 투자 자금은 SOC등에 투자하여야 옳았던 것이다. 그외에도 비효율적인 인력, 예산운영등 예산낭비 요인이 잔존하는 점, 지방재정

에 대한 무책임 등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 저리의 국내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충은 시장수요를 흡수하면서 통화량(유효수요)의 창출 없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권장할 재정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없는 재정정책적 수입임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와 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이자율이 문제라 하겠다. 이자율의 적정은 지방채의 수요·공급 양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채제도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문제점을 접근한다면 공급측면이 기채방법론이고 수요측면은 금융수단으로서의 지방채의 상품성 문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기채방법론 그리고 지방채의 상품성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도덕적 가치관과 채권시장의 환경변화와 직결된다 하겠다.

2) 이수범 연구논문, “정부결산의 효율화”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논문집 제3권 1호 통권 4집 별책본 pp. 136-137, 지방재정, 1997. 3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용” p.38에서 이수범 교수는 화려한 지방청사 신축을 비판하고 있다.

<표 1> 지방채상환액과 상환능력 비교

(단위: 억원, %)

시 · 도	지방채상환액(A)		A/총예산		A/지방세		A/(조세+세외+교부세)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서울	418	4,784	2.8	3.7	606	8.8	3.4	4.7
부산	810	6,371	1.7	11.4	508	47.3	2.3	8.2
대구	381	1,600	1.0	4.5	401	18.9	1.7	7.6
인천	440	476	1.3	1.5	4.3	5.4	1.8	2.2
광주	866	2,041	4.0	9.8	18.7	53.6	5.9	15.8
대전	570	377	3.0	2.0	10.6	8.0	5.9	4.1
울산	407	573	3.1	4.6	8.8	13.6	4.3	6.7
경기	3,559	3,563	2.5	2.6	8.6	9.6	3.3	3.7
강원	10.89	1,146	2.5	2.6	21.8	25.1	3.8	4.6
충북	408	821	1.3	2.9	9.4	20.8	1.8	4.3
충남	861	1,217	1.9	2.9	14.1	22.0	2.9	4.8
전북	889	818	1.9	2.0	16.6	16.5	3.1	3.1
전남	1,193	1,256	1.9	2.2	21.8	24.9	3.1	3.7
경북	1,198	909	1.9	1.6	12.8	11.0	2.9	2.6
경남	1,301	1,898	1.9	3.1	14	20.4	2.9	4.6
제주	440	437	2.8	3.3	18.9	21.0	4.9	5.6

주: 일반회계+특별회계 최종예산기준.

자료: 행자부

2. 지방정부 재정에 있어 지방채무의 지위와 특성

1) 지방채의 위치

지방재정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이다. 그러나 그 외에 지방세외수입이 있다. 이상의 자체수입 외에 의존수입이 있다. 즉, 지방교부

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그것이다.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는 이같은 자금으로는 불가능 할 때가 허다하다. 이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에 의한 건전한 차입(지방채)에 의하여 조달한다.

지방채무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재정수입은 채무외수입과 채무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후자가 지방채무인

것이다.

지방채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채무인 일시차입금은 제외한다. 재정법은 제7조와 제8조에서 지방채란 증서발행의 경우만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차입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방채무란 넓은 개념으로 재정법에서 정의한 지방채뿐 아니라 기타 공채와 차입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지방채에는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채(채무)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회복지사업, 도로교량, 하천정비, 교통시설, 공원, 주택택지, 농업시설, 상업시설,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문화시설등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채는 상하수도, 지하철, 주택단지, 기타공영개발을 위하여 발행된다. 기타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주택택지,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을 위하여 발행된다. 이같은 지방채무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채무라고 할 수가 있다.

지방채는 비교적 장기채가 원칙이다. 6년 이상의 장기채가 58%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4-5년이 34.6% 기타 3년 이하의 단기채로 구성되어 있다. 5년미만

의 단기채는 전체의 7.3%이고 5년 이상의 중장기채는 9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채의 구성이 미국의 96%수준, 일본의 94%수준에 비하여 낮으니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지방채는 그 자금원이 정부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 높은 비중이었으나 이것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자금이 46%인데 반하여 시증은행이 32%나 된다. 그리고 공영기업금융공고가 6.7%이다.

2) 지방채의 특성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의 하나다. 지방채는 다른 세원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을 차입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고 그 상환이 차입한 년도의 다음 수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다른 특징 중의 하나다.

(1) 이자가 붙은 지방채 성격의 지방채

지방채는 공공투자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리고 그 장점은 그 상황이 확실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주민은 이 확실성 때문에 축적한 부를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구입에 투자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시장수요를 창출함이 없이 구매력을 흡수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금을 미리 주민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게 된다. 현재 소요자금이 100이라면 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100(\text{자금}) + 10(\text{이자}) = 110(\text{총부담})$ 이란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는 “이자부담 지방채” 또는 미래 징수할 지방채를 이자를 부담하고 미리 당겨 쓰는 지방채“라고 할 수가 있다.

(2) 과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채

지방세입 예산은 그 주 수입원이 지방세임은 물론이다. 지방채는 대량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투자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지방세를 미리 징수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면 결국 동 지방채 발행의 담보는 지방세과세권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방채도 지방세와 같은 근거에 있다고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를 “조세권에 의하여 그 상황이 담보된 채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파탄의 경지에 이르면 그 담보권은 결국 국가에 의하여 상황이 담보된 채무인 것이다.³⁾

(3) 지방채계획제도로 양을 통제 받는 지방채

현대 지방채의 기체는 보통회계인가 기업회계인가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대다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어떻게 규제 내지는 통제를 받고 있는가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는 국고보조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채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립 확정된 기채계획과 일치되어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사정, 동사업의 긴급성등 종합적인 정책을 감안하여 지방채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기채목적, 지방채발행총액의 시령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안, 재정투융자계획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다. 이같이 지방채계획제도는 지방채 규모의 양적통제를 기하는 제도로 1)사업별 기채소요액 적산, 2)지방채 자금의 총액과

3) 이상용 외1인 전개발표문. pp.10-11.

사업별 배분, 3)지방채발행 계획의 구분, 4)외채와의 균형등 각층면과 당연히 상호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채 허가제도를 통하여 질적 통제를 받는 지방채

지방채 허가제도란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계획에 포함된 후에 다시 개별적 허가를 받는 제도로 각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채의 기채는 내무, 대장성 양장관의 2중 허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방채의 계획범위에 있다하더라도 그 질의 통제를 위하여 신청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를 두어 기채허가의 수속을 받게 하고 있다. 지방채 허가제도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많은 비판과 개혁주장이 제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5)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단으로서의 지방채

공공투자 중심이 되는 시설의 건설등에 집중적인 대량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같이 큰 자금을 지방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지방채의 경우 수년간 장기간에 걸쳐 채무의 상환의무가 부여

되지만 동시에 공공투자에 의한 시설등도 똑같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시 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pay as you use principle)”을 잘 나타내어 최근 오히려 지방채에 의한 자금 조달 방안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 현황의 특징

1)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채 발행요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채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15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회의의 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정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1)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6)기타

주민의 복지 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에 한한다.⁴⁾

지방채는 첫째, 주민의 부담(과세권)을 담보로 한 채무이다. 둘째, 1회계년도를 초과하여 재정차입을 한다. 셋째, 공공의 필요(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투자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등이 그 요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채발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지방채발행은 결국 주민의 세금이 그 담보이기 때문이다.

2) 지방채 발행 현황

지방채 발행잔고는 1995년 이후를 보면 지방채의 비중은 총세입의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자체수입의 16%선에 이르고 있다. 이제 지방채발행 잔액을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채가 지방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의 적정은 어떠한가?

현재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18.8조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표 2>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2000.12.31기준 억원)

년 도	지방채 발행 잔액	비 고
1995	11조5,257억원	
1996	12조9,466억원	
1997	15조1,139억원	
1998	16조2,229억원	
1999	18조0190억원	
2000	18조7955억원	

이 중 국내채가 17조원 전체 채무의 95.1%를 점하고 있다. 외채는 1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채 규모의 4.9% 정도를 점하고 있는 외채는 미국, 불란서, 독일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건설한 채무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총지방채채무잔고는 대GNP비율로 2000년도 말 현재 3.8%로 중앙정부부채잔고의 대GNP비율 19.7%의 20%수준이다. 일본의 지방채 잔고가 GDP의 30%를 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지방채잔고의 증가추세를 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0년도로 오면서 약간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발행 목적별로 보면 대부

4) 권형신의 2인저, 『한국의 지방재정』 pp. 175-193. 해남사.

<표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말 현재 잔액기준)

구분	합 계			2000 지방채회계별내역			외채
	증감비 20/97	1997년 소계	2000년 소계	일반회계	기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서울		14,639	18,661	2,102	15,516	1,043	1,219
부산		25,944	24,486	7,193	12,112	5,181	1,579
대구		30,739	17,783	5,846	8,123	3,814	1,076
인천		14,704	6,776	2,071	499	4,206	268
광주		11,925	9,370	4,935	2,238	2,197	283
대전		9,363	8,098	3,000	2,556	2,542	348
울산		3,621	4,586	2,142	1,176	1,268	325
경기		44,125	29,851	1,6079	2,440	11,332	1,434
강원		11,954	8,305	5,043	1,019	2,243	226
충북		9,087	4,699	2,860	528	1,311	116
충남		11,608	9,094	4,574	1,347	3,573	14
전북		13,552	9,039	4,911	1,291	2,837	30
전남		12,793	6,940	3,097	2,292	1,551	0
경북		16,565	12,573	8,664	1,373	2,536	0
경남		20,836	11,353	4,624	1,375	5,354	21
제주		7,223	6,341	3,986	1,382	973	2,291
계		258,678	187,955	81,127	55,267	51,561	9,230

외채는 각회계별채무액에 포함 작성

자료 : 행정자치부

분이 SOC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이상 현 우리나라의 지방채는 건전성 채무라는 특징을 부여함에 무리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지방채 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여 낭비가 없는 채무의 지출로 지방경제활성화를 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방채무 관리 강화

1) 기채승인제도와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문제

지방채발행을 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부부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발행할 수

<표 4> 시도별 외채 현황

(2000년말 현재, 단위: 억원)
(2000년말 매도기준율1,259.70원/1불)

구분	외채현황			구분	외채현황		
	소 계	원 금	이 자		소계	원금	이자
서울	1,484	1,219	265	충북	148	116	32
부산	1,892	1,579	313	충남	18	14	4
대구	1,231	1,076	155	전북	33	30	3
인천	437	268	169	전남	0	0	0
광주	356	283	73	경북	0	0	0
대전	423	348	75	경남	31	21	10
울산	423	325	98	제주	2,752	2,291	461
경기	1,566	1,434	132				
강원	294	226	68	계	11,088	9,230	1,858

있는가에 대하여 양론간에 대립이 있다.

(1) 일반론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
나 아니면 자율적인 문제나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
한다는 소박한 지방자치 이론에서 시작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행하는 기채행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요 또한 의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
과 세출 채무 등 모두를 지방정부가 자
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가 바
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서는 지방채는 자율결정의
문제로 안착한다.

그러나 현금 지방정부는 세입세출문
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지 못한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
는 세입의 부족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의 급변에 따른 지방주민
의 수요(demand)는 급증함에도 재원은
한계에 부딪친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의존이 불가
피하게 된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
게 된다. 이같은 지방채의 발행으로 재
정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책임을 최종
적으로 중앙정부가 진다면 결국 지방정

부의 재정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가 정당화되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은 경상적 지출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 자본적 지출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회수기간도 장기를 요한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 투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자원의 적정배분, 소득의 공평배분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등 제정책의 포괄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지방채 기채권의 독립성의 문제는 항상 한계점을 암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같은 규제는 일반화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는 기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화되어 있으나 주 산하의 지방정부는 강한 주 정부의 규제하에 있다. 네덜란드는 기채승인은 불필요하지만 아예 외화채발행 금지가 되어 있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은 기채승인제도가 없다. 그러나 이태리,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 대다수 국가는 기채승인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2) 기채발행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이같은 기채승인제도에 대하여 발전적 개선을 요구하는 3가지 대립안이 있다.

① 하나는 제한적 기채권부여 이론(승인우선 자율 하순위)이다. 이 주장은 기채승인제도는 유지하되 중앙정부의 통제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택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을 주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이 안은 중앙정부가 통제할 기채대상은 보다 거국적인 것으로, 자율에 위임할 기채는 지방편익에 충실한 기채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즉 포괄적 승인제이다. 그러면서도 기채승인권의 계속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지방채의 남발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는 인플레이 등 국가경제에 악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기채승인은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자원배분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가중시킨다는 등 이유를 제시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는 국가전래설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 기채권의 독립권

을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원래 독립이란 것은 인사, 재정의 독립을 의미하는 까닭에 지적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의 독립은 그 권한과 책임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권이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국가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하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독립성은 인정될 수가 있다. 즉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며 주민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인사와 재정이 독립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은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채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상당한 범위내에서 자본예산제를 편성 지방정부에 제한적인 조건의 기채발행권을 주고 있는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② 이에 대하여 기채 자율론(기채승인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논거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비추어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은 당연한 것이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중앙의존적 재정운영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③ 다른 하나는 절대적 기채허가론

(기채권 허가제도의 고집 이론)이다. 즉, 지방정부의 기채권은 허가제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중앙정부가 기채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대상, 사업시기, 채무부담계획등 모든 절차에 깊이 관여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제115조에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지침을 내부부장관이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함으로써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허가제도는 그 주장에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채가 우후죽순으로 지방정부별로 임의로 발행될 경우의 중앙정부 차원의 통화량, 거시경제정책, 물가 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매월 8월말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부처별, 단체별, 회계별, 사업별로 구분하고 각각 사업에 대하여 발행규모, 기채선, 발행방법, 발행시기, 발행조건, 상환재원을 분석하여 10. 31까지 확정한다.

물론 이같이 허가제도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아직 풀뿌리 민주화가 토착화 되

지 아니한 단계에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개개 지방정부의 차원보다 우선하여야 함으로 이의 조정을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채기체계획 수립시 행정자치부는 준수하여야 할 중앙정책으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농어촌발전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대통령의 연두지시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채발행을 허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낙후한 지방정부와 발전된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제한적 기채승인제도를 추천한다. 그 장점은 가히 기채승인주장과도 같다. 다만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란 관점에서 앞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자율성의 폭을 넓게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채발행제도의 개선 발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중앙에 집중적으로 귀속시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자원을 재배분하는 형식으로 지방정부를 재정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

방재정 체제를 유지하는 한 지방채 공모에 있어 기채승인제도가 골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의 최후 담보자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중앙 지방정부간 업무의 재분배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입제도, 세출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채관리제도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 영역에 있어 점진적인 지방정부으로의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채의 발전 방향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채승인제도란 지방재정 건전성 보장기능을 존치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발전적 정책을 보면 첫째 구체적 승인제도에서 포괄적 승인제도(발행한도제, 총액한도제라고도 한다)로의 전환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기채건별, 승인제에서 예산규모별 발행규모 총액규모 지정승인제로의 발전적 개혁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발전적 제도로서 적채단체의 기준을 투명한다는 것, 기채승인기준을 투명화 객관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투명화 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의 낭비를 놀라울 정도로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발전적 기채론이 시행되기 전

<표5>지방채 잔고 및 상환비중

(단위: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지방자치단체부채잔고/GDP대비비중	3.3	3.7	3.7	3.5
/총예산대 상환비중	8.1	7.4	6.5	3.1
/지방세대비 상환비중	26.6	24.7	21.1	13.1

참고: '97-'99년은 결산순계 2000년은 최종예산임.

자료: 행자부

에 지방재정의 건실화가 요구된다. 2001. 2. 20기준 단체장 판공비를 30%나 올리는 현실, 2001. 1. 19. 현재 지방정부가 조달청발주를 기피하고 자체적으로 발주한 금액이 1조9657억원이나 되어 예산절감 노력을 피하고 있는 사례, ○○광역시자치단체 판공비가 2000년 1년간 60억원에 이르는 현실 등은 기재자율권의 부여를 아직 어려운 사업으로 남기게 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채규모는 지방재정을 위협할 단계는 아니다.

위 <표 5>에서 총예산대비 상환비중은 1997년 26.6%에서 2000년 13.1%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 지방채의 발행제도의 장·단기적 발전방향

(1) 장기적인 발전방향

지방채는 국채와는 다르다. 지방채의

발행은 중앙은행 인수에 의한 발행방법이 택하지 아니함으로 유효수요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이를 흡수하는 국가수입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국채에 비해 거의 없고 동시에 통화관리에 큰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개발 및 소득향상에 재정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어느정도 발행의 신축성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채는 자본시장을 통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는 대부분이 공권력적인 재정거래를 통하여 강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채를 구입하려고도 수요자측에서는 지방채에 투자자를 유인하는 정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같은 자본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요자에 유인적 정보가 제공되는 지방채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채 소화문제 등이다.

(2) 단기적 발전방향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적 접근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과거 지방채발행에 대한 고전적 주장인 비모체주의에서부터 점진적 이탈이다. 기채승인제도에서 기채의 탄력적 자율성운영제도로 발전함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한 지방채발행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통화금융정책, 외채관리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 탄력성을 주는 「탄력적 자율 기채제도」를 의미한다. 지방채발행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연계 재정계획의 확정」과 효율성 있는 집행이다.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이다. 지방채를 「고수요 상품」으로의 개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이어야 한다. 첫째, 초긴축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물가와의 연계문제. 셋째, 총유동성(M3)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 넷째, 세출요인 증가(실업,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와 지방채발행문제. 다섯째, 총수요증대정책에 부의 효과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여섯째, 지방채발행과 실업문제.

4) 공적기금운영기구 등 금융기구의 설치

지방채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은 지방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채의 가용도를 높이며 지방채의 구매매출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용이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보완역할을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발행금리가 시중금리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같은 금고는 외국에는 이미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적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방공영금융공고, 프랑스의 예금공탁금고(CDC)와 지방금고(Credit Local de France)등을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금고의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을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예견된다.

5) 지방채의 수요기반 구축

우리나라 지방채 시장은 한마디로 정상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정상 지방채시장을 전제로 정상지방채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그 결과나 효과에 바른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채권거래를 포함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행금리가 비현실적이다.(최근 저금리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환경은 지방채의 상품화에 긍정적이다.) 둘째, 강제참가 소화방식이 대부분이다. 셋째, 단기채 중심으로 종류가 다양치 못하다. 넷째, 일반투자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채권수요기반이 취약하다. 다섯째, 채권유통시장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책정된 금리로 지방채를 소화한다는 것은 또한 그 발행규모 여하에 따라 지나치게 적자재정을 운영할 경우 「지방정부의 파산」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지방채 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제

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또한 시장경쟁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형평의 원칙과 시장원리에의 안착을 불가능하게 하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채발행을 권장하는 경향을 가져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반론도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지방자치가 안착하면서 지방채가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수단의 중요한 하나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그 투자분야, 차입선, 차입자금의 조건, 상환조건 등 모든 조건이 사치성 청사 신축과 같은 소비성 투자가 아닌 것이어야 하는 등 시의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하겠다.

지방채발행을 통한 불균형예산의 청정은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재정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거품재정을 투명화하고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개편한 후 필요한 자본적 투자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요청된다.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기준은 신용평가를 기초로 하는 체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채무비 비율이라든가 실질수지비율과 같은 현재의 발행기준은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채무에 있어 아무 실익이 없다. 실제 한국의 지방정부의 기채방법은 바로 이 경우다. 지방채 발행기준을 신용평가 기준으로 전환된다면 지방채 발행의 남발은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신용도의 공개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채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 상환능력, 사업의 타당성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협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용에 의한 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기채상한제도를 확립하고, 동한도내에서 지방정부가 기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5. 지방채무와 국민경제

지방채의 발행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정정책, 통화공급, 인플레이션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채 발행과 연관해서 종종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되고 있다. 이는 기채권을 중앙정부에

둘 것인가 지방정부에 일임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현대 대다수의 국가는 이의 발행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일임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1) 지방채의 발행규모는 통화량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규모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방채는 중앙은행 인수에 의한 채권의 발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지방채의 발행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기존의 시장경제내에 스-토크된 자금에서 인수됨으로 새로운 자금의 창출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지방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공모형태를 취하던가 또는 시장수효를 그대로 창출하는 외채의 경우는 화폐의 초과공급을 야기하여 중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함을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후죽순처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임의로 외채를 도입한다면 그 규모는 정부의 금융통화정책을 무용화하기에 충분하며 국가경제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인플레이를

초래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은행법 제14조에 의하여 연방은행이 공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시중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 예외 조치로 긴급사태에 한하여 특별채보증서에 한하여 중앙은행의 인수가 허용된다. 이는 시장경제와 지방채의 발행과의 자연스런 조화를 전제로 한 조치이기도 하다. 시장구매력의 초과는 대체로 물가수준의 상승, 통화증발 화폐가치의 하락 등을 가져온다. 또한 지방채의 인수자금이 정부의 기금이나 재정투융자금이라고 할 때 이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연히 투자될 수 있는 투융자금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업자금용 기채구입에 투자될 때 시장의 예측된 수요는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채에는 국채와 지방채가 있다. 따라서 지방채의 규모뿐 아니라 국채의 규모를 고려한 통화정책 그리고 공채의 발행 내지 인수방법등이 심도 있게 검토된 후가 아니면 일반적인 지방채권의 발행은 국가 금융통화정책을 저해하게 된다.

(2) 지방채의 발행 목적이 또한 국토개발계획과 연계를 갖는다. 지방채는 일

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채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일반회계가 24.7%, 공기업 특별회계가 29.8%인데 반하여 기타특별회계가 45.5%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회계별기준은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와는 구분의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모든 회계에 걸쳐 이들 SOC사업이 높은 율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국토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투자정책의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 만약 지방채가 지방정부 임의로 발행된다면 지방채의 소화자금, 과중한 이자부담, 지방채에 대한 각종 특혜문제(미국은 지방채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고소득층이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다). 증권발행채의 합리화의 문제등으로 순기능은 마비된다 하겠다.

(3)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소득 및 자산을 재분배과정을 통하여 빈부의 차이를 격화시킨다. 전국적 규모의 무게 획적 산발적 지방채권의 발행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의 확대는 생산증대

효과와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한국 채권시장에서의 지방채 발행여건은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국적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수·소화방법에 난제를 초래하고 지방채 발행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10% 재정지출 증가가 1%에 가까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물가와와의 관계에서 전국적인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로 지방정부가 파산지경에 처할 경우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채의 발행권을 독립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최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된 상·하수도료, 버스·택시요금등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나름대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나 국가의 물가 안정이란 정책과는 충돌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지방채는 지방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주민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지방채 발행에는 그

채무의 보증이 필수요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는 지방정부가 25%나 되는 현실에 이들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소화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이들 영세한 지방정부는 자금의 소요가 긴박하다. 지방채는 소화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와 같이 재정자립이 이루어진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채 소화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지역균형은 깨지고 지방정부의 파산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5) 지방채의 대규모 발행은 이것이 시장수요를 흡수할 경우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그 인수가 보장되어질 때 가능한 예측이다. 지방정부에 의하여 임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수 그리고 잔액을 규제하기 어렵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전후 독일의 경우 1950-1966년까지는 경제부흥과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재

건을 위한 경우로 성공한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과도 일치한다. 이 기간동안 독일 1인당 채무는 406마르크에서 1,560마르크로 증가하였으나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1951년 18.7%에서 1966년 18.9%로 거의 일정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1941년 이후 총액기준으로 잔액을 규제하고 있으며 1985년 12월 이후 한도잔액은 2조790억불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건설공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국고수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채의 이자율 효과는 적자재원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여 시중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적자보전이 되는 경우 이자율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면 바로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6. 결 론

(지방채발행 발전적 독립성의 한계점)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권한과 책임의 최종귀속이라는 관점을 도외시 한 채 지방정부의 고유권

한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독립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발전적 주장이 있으나 이는 아직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귀결이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상기할 때 그 운영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영능력이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화 될 때 그 권한의 폭을 점진적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경우도 그 역사성에 의거 기채권의 제한적 독립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택하여야 할 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 보장기능을 존치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발전적 정책을 원용한 기채발행방안이다. 이는 포괄적 승인제에 준하는 제도(발행한도제, 총액한도제라고도 한다)로의 전환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기채건별, 승인제에서 사업성질별 예산규모별 발행규모 총액규모 포괄승인제로의 발전적 개혁을 생각할 수 있다. 적채단체의 기준과, 기채승인기준을 투명화 객관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투

명화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의 낭비를 부정할 수 없다.

포괄승인제도는 다음의 2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자본예산제 사업에 있어서는 총액자율제도를 인정하여 Positive system을 택하고 비자본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제 또는 불승인제(Negative system)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예산제 사업인 경우에도 국가적 균형하에 사업기준을 규제할 수는 있다. 다른 하나는 예산 규모별 발행규모 총액규모 지정승인제도의 발전적 개혁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자율승인제보다는 기채승인제에 보다 치중한 발전적 개혁안인 데 대하여 전자는 자본예산제 사업에는 그래도 자율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중앙정부의 지방채무관리제도의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의 조정 양보라는 점에서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견지에서 “제한적인 포괄승인제”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방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침에 적극호응하거나 반대로 위배하는 경우 인센티브(incentive) 또는 페널티(penalty)제도를 도입함이 효율적이다. 페널티

(penalty)제도란 여기서 제안한 “제한적인 포괄승인제”를 지방재정의 자주성이란 관점에서 발전적 개선안을 시행하였음에도 이의 기준을 임의로 어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의 일정율(예, 20-30%범위내에서)을 감액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차병권, (1997 재판) 「현대재정학」, 박영사.
- 이계식, 황성연(1998) 재정계획의 정책과 제와 실천방안. 「한국재정학회 1998년도 정기대회발표 논문집」.
- 이필우(1994) 「조세론」, 법문사.
- 이수범 1998. 5. 「한국지방재정정책의 방향」, 백림조세연구원 발행.
- 이수범 1998. 논문 「IMF체제를 불러온 한국 재정분야의 문제점과 대책」, 「수범 시사 논고」 98년 8월호, 백림조세연구원 발행.
- 이수범 저. 공공경제론(1996). 선학사.
- 수범시사논고 (1996 - 1998.) 통권 1호 - 44호, 백림조세연구원 발행.
- 권형신, 이상용, 이재성 공저 (1998). 한국의 지방재정(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해남.

조기현, “지방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7. 6.

Cukierman A., and A. Meltzer, “A Political theory of Governmet Debt and Deficits in a Neo-Ricardian Framework” American Economic Review, 1989, pp700-750.

R. Musgrave and P.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s”, Leiff Johnansen, Public Economics, 1965, 동 일역서 『공공경제학』

Musgrave R. and Musgrave P. (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 McGraw Hill.

Feldstein, Martin(1987). The Efficiency of Tax Expenditures Re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3. no. 1.

Leiff Johnansen, Public Economics,

1965, 동 일역서 『공공경제학』

지방재정학보(1998. 6) 제3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학보(1997. 12) 제2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학보(1996. 12) 제1권 제1호. 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학보 제3권 1호. 통권 4집 (1998. 6.)

한국지방재정학회 1999. 2000. 연구논문집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연감 199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연감 199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연감 199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